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촌공간계획과)

1. 개정이유

농촌특화지구의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출용 농산물 등과 같이 집적화하여 주변 농산물과 차별화된 재배방식 적용이 필요한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특화지구의 신규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고, 특성화 농업지구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 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정비, 농약·비료 등 자재 사용 등을 필요로 하는 동일·동종의 농산물 또는 동일한 재배 방법을 적용하는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여 농지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성화농업지구를 의미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특성화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친환경 농산물, 수출용 농산물,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농산물 등과 같이 주변 지역의 농산물과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연접 또는 인접한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규모화하여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농산물 종류별 또는 재배 방법별 농지 면적 및 각종 인증 면적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일 것
다. 지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건조·저장·선별·포장 등을 하거나 해당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유통·가공시설을 농지와 함께 집적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 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정비, 농약·비료 등 자재 사용 등을 필요로 하는 동일·동종의 농산물 또는 동일한 재배 방법을 적용하는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여 농지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성화농업지구를 의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연락처	(044) 201 - 1558